

— 구미시공설효친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(안)—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### 2. 제안이유

- 납골당에 대한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
- 상위법 개정 관련 조항 변경

### 3. 주요내용

- 납골당의 명칭 변경 : 효친관 ⇒ 승조당  
(제명, 제1조~제5조, 제7조, 제10조, 제12조~제14조)
- 상위 관련 법 변경 :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⇒ 장사등에관한법률(제1조)
- 토지분할로 위치에 대한 지번 조정 : 산6, 산7 ⇒ 산6-1, 산7-1로(제2조)

### 4. 참고사항

-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
- 구미시공설효친관설치및사용조례

### 5. 검토의견
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(제1조) 납골당의 명칭을 산자 위주의 명칭에서 사자위주의 명칭으로 현실에 어울리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.
-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지역은 대부분 “납골당”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추모의 집, 납골묘원, 극락 영묘전 등도 있습니다.
- 상위법이나 타 조례 저촉 사항은 없음.